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542

발의연월일: 2023. 1. 18.

발 의 자:김원이ㆍ기동민ㆍ박상혁

서영석 · 송갑석 · 신정훈

어기구 • 우워식 • 조오섭

최혜영 · 홍성국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·기록·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(이하 "결핵통합관리시스템"이라 함)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하지만, 결핵은 2급 감염병이고 가축에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 관리 등에 한계가 있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,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 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
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"구축·운영에"를 "구축·운영 및 결핵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에 관하여"로 한다.

-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.
- 1. 「주민등록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
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 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
- 3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 스템
- 4. 「지역보건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현 제7조(결핵관리사업 (생 략) <신 설>		제7조(결핵관리사업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. 1. 「주민등록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」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4. 「지역보건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
		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
<신 설>

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<u>구</u> <u>⑥ ------</u> 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는 정보시스템
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 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 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_ 을 따른다.
- 축·운영 및 결핵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에 관하여----.